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지도·감독 등 대상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 추가 〉
■ 이성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922호)

2025. 1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한석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지도·감독 등 대상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 추가	2

I. 제안경위

2025년 6월 18일 이성윤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6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와 강사(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가 고의 또는 과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에게 일부 강의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이때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와 관련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고의나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련 행정기관이 직접 자료제출·조사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데도, 이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어 제재 전 조사에 어려움이 많고, 적정 제재 수준을 충분히 담보하지도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고 명령, 자료 제출 요구 및 서류 조사 등을 통하여 지도·감독 등을 할 수 있는 대상에 제재 당사자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을 추가하고자 함. 훈련생이 만족하는 양질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보장하는 동시에 행정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제5호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지도·감독 등 대상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 추가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현행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고 명령, 자료 제출 요구 및 서류 조사 등을 통하여 지도·감독 등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인 제58조가 있고, 그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인정을 받은 자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개정안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¹⁾을 지도·감독 등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임.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8조(지도·감독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시설·장비·기자재, 훈련생의 출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등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 등으로	제58조(지도·감독 등) ① ----- ----- ----- ----- ----- ----- -----

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①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나 그 밖에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라 한다)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훈련생을 가르칠 수 있다.

하여금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는 등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1. ~ 5. (생략) <u><신설></u> 6.·7. (생략) ② ~ ⑤ (생략)	----- ----- ----- ----- -----. 1. ~ 5. (현행과 같음) <u>5의2.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u> 6.·7.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현행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5조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의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²⁾, 제35조의2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에 대하여 동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5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2. 제3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
4. 자격증을 빌려 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취소 및 정지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실시하거나 비용을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강의를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³⁾.

이처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주었는지 여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 본인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지도·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런데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하여 정하는 현행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8조는 제1항각호에서 지도·감독의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한편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지도·감독은 행정조사에 해당하는바 조사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함⁴⁾. 이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8조제1항은 종전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가 “직업능력개발훈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5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강의 제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제12조, 제15조, 제17조제1항제1호, 제18조,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강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의 제한에 관한 세부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4)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행정조사의 기본원칙) ① 행정조사는 조사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련에 필요한 시설·장비·기자재, 훈련생의 출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등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개정된 바 있음⁵⁾.

이러한 지도·감독의 성격을 고려할 때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고 명령, 자료 제출 요구 및 서류 조사 등을 통하여 지도·감독 등을 할 수 있는 대상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을 추가하여 명시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을 지도·감독 등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지도·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에 대한 제재를 위한 조사를 수월하도록 하는 의의가 있음.

고용노동부는 행정조사인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등에 대한 지도·감독의 대상을 명확화하여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38

5) 법률 제18751호, 2022. 1. 11. 일부개정, 2023. 1. 12. 시행